●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과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을 "수입국정부, 군 관련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입여부"를 "가입여부, 국제협력 및 공조관계"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을 "교육, 오류 정정요구"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 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나 지역(이하 "나지역"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2항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을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되, 제12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

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단,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제24조제2항 단서 중 "그"를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후단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금결제기간"을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계약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을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수출 후 7일 이내에"를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 출해야한다.

제28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 중 "나 지역"을 "나의1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최종목적지국가가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서, 제72조"에서 전단을 삭제하고 "제72조"로 한다.

제35조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의2 지역 또는 나지역으로"를 "가의 2 지역,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국제연합에서"를 "제90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www.yestrade.go.kr)에 게시된"을 "(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안전유지"를 "안전유지 등"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수출 후 7일 이내에"를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무역안보과장"을 "무역안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0조제10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나의2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3조제1항"을 "영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90조의2의 제목 "(우려거래자 지정 및 공고)"를 "(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고할"을 "등록하여 수출자 등이확인하도록 할"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9,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16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4, 별 지 제2호의3 및 별지 제5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021-202, 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기관) ① 별표 2 및 별	제5조(허가기관) ①
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	
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	3
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	
당되는 물품등(<u>수입국 정부가</u>	<u>수입국정부,</u> 군
<u>군사목적</u> 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런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한함)	군사적 목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허	제9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대	
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u>외교부장관</u> 과 협의하여야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한다.	<u> 장</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① 산업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①
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	가입여

<u>부</u>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 저 ③ (생 략)

<u><신 설></u>

제13조(자가판정) ①・② (생략) 조

③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부실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등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제1 저 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 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

	<u>부, 국제협력 및 공조관계 -</u>
	② (현행과 같음)
	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
	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
	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
	5호의2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ᅦ	13조(자가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 오</u>
	류 정정요구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
	 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 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 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 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판 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 ② 삭 제
- ③ ~ ⑤ (생 략)
- 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 ①・ 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 ①・ ② (생 략)
- 1. (생략)
- 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 📗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의 수 | 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 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 |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
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 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다) 또는 나 목 중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 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 다)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 │ 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

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 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 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로 갈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 3. (생략)
- ③ ~ ⑧ (생 략)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 ① (생략)
- 1.~ 5. (생략)
-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단서 신설〉

7. ~ 8. (생 략)

- ② (생 략)
 - 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1.~ 5. (현행과 같음)

--.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 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 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 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7.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u>단서</u> 신설〉

5. ~ 6. (생략)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최종목적지 국가가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u>, 제5호, 제6호
- 2. ~ 4. (생 략)
- ④ (생 략)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

4
<u>다만,</u>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
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
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
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6. (현행과 같음)
③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1. <u>제1항제1호, 제2호</u>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면제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
가대상품목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 ⑩ (생 략) <신 설>

부 면제 등) ①
<u>মা4ছ</u>
,
② ~ ⑩ (현행과 같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
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
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최종수
<u>하인ㆍ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u>
사용 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단, 요
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
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
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

①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 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

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	<u>는 경</u>
우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	는 경
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	세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학	한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	제이
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
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유	원자력
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	통제체
제 이중용도품목의 CAT	[1, 방
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	목, 오
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
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팀	발 • 생
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
에 관한 협약(CWC) 통제	세품목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⑩</u> 제1항부터 제5항, 제7형	항부터
제11항의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시	-기준)
①	

출을 허가한다. 1. ~ 7. (생 략) <신 설>

- ② ~ ⑤ (생 략)
-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 7 경)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 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 일 이내로 한다.
-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으로 한다.

<u>,</u>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
경)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u> 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u>1년으로</u> 한다.
②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

달리 정할 수 있다. <u><단서 신</u> <u>설></u>

③ (생략)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 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 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 15.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 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 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 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

<u>단, 수입국</u>
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u>수 없다.</u>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u>낙</u>
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1. ~ 15. (현행과 같음)
② <u>수출</u>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

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 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 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 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 1. ~ 6. (생략)
- ④·⑤ (생 략)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생략)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 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 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 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 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단,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
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
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
의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
<u>수</u>)
2
<u>단, 대상품목의 목적지</u>

- 1. ~ 5. (생략)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 출허가는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신청서에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의2 지역 또는 난 지역인 경우,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 저 청서류) ① (생 략)
 -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 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 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 약서 〈단서 신설〉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나의1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
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
1
<u>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u>
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
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 3. (생 략)

-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 ^저 와 신청조건) ① (생 략)
 -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 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 종사용자, 사용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 1. (생략)
 - 2. <u>최종목적지국가가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서, 제72</u> 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 거래자의 등급이 AAA 등급 인 경우(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

<u>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u> <u>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u> <u>있다.</u>

2. ~ 3. (현행과 같음)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
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단, 대상품
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u>제72조</u>
<u>.</u>

- 3. (생략)
- ③ · ④ (생 략)
-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 서류)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 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 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단서 신설〉

- 5. ~ 6. (생략)
-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 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가의2 지역 또는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5소(품목포괄수술허기	h의 신정
서류)	

- 1. ~ 3. (현행과 같음)
- 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5. ~ 6. (현행과 같음)
-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
 - _____
 - _____
 - _____
 - ----- <u>가의2 지역, 나의</u> 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 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 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 12. (생 략)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물 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 다.
- 1. <u>국제연합에서</u> 지정되어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 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 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 래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게 수출하려는 경우. 다

· 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제90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u> 제2호에 따라</u> (www.y
<u>(www.y</u>
(www.y 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만 '국제평화와 <u>안전유지</u>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 별조치'에 의한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 2. · 3. (생략)
- ④·⑤ (생략)
-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생략)
 -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중개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중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 은 중개자는 별표 19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정기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7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 위원회와 심의위원회) ① (생략)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 통상자원부 <u>무역안보과장</u>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

<u>안전유지 등</u>
2.·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현
행과 같음)
②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
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
일이내에
<u>.</u>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
위원회와 심의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②
<u>무역안보정책과장</u>

통제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는 임 기 2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 제80조(등급별 특례) 다음 각 호 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율 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특례 는 별표 19에 따른다.
 - 1. ~ 9. (생략)
 - 10.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 <u>〈단서</u> 신설〉
-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 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2. ~ 9.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89조(자료의 공개) 산업통상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등급별 특례)
New York Control of the Control of t
1. ~ 9. (현행과 같음)
10
10.
면제 <u>(단, 나의2</u>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u>한다.)</u>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u>.</u>
1. 영 제43조제2항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자료의 공개)

원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사전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 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 3. (생략)

제90조의2(우려거래자 지정 및 공 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4호의 우려거래자를 지정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전 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전문판정
<u>.</u>
1. ~ 3.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
<u>록)</u> ①
도근되셔 스호키 도시 청시되는
등록하여 수출자 등이 확인하도
<u> </u>